

上・下水道料金 賦課期間 短縮計劃

I. 目的

현행 상·하수도 요금부과는 검침에서 요금 납기까지 평균 51일이 소요되고 있는바, 이를 평균 20일 단축함으로써 거주이전시 전·후 사용자간 요금계산 불편 및 전 거주자의 사용요금을 새 입주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의 민원을 줄이고 체납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함.

II. 概要

- 現行 檢針日程 및 料金納付
 - 검침주기: 2개월에 1회 실시
 - 매월 1일~18일: 검침
 - 19~익월 23일: 전산처리(요금계산) 및 고지서 송부

- 24일~말일: 요금납부

- 變更되는 檢針日程 및 料金納付

- 검침주기는 현행과 같이 2개월에 1회 실시
- 매월 22일~익월 7일: 검침
- 8일~23일: 전산처리(요금계산) 및 고지서 송부

- 24일~말일: 요금납부

※22일~30일 검침분은 익월말일, 1일~7일 검침분은 당월말일 납부

III. 施行時期: '99. 1. 22부터

IV. 業務處理日程變更圖(別添)

※ 현행보다 평균 20일 단축됨

V. 期待效果

- 검침에서 요금납부까지의 기간이 단축되어(평균 20일) 직전 사용량에 대한 요금부과가 가능한 관계로

-전·후 사용자간 요금계산불편 및 요금부담 시비 감소

-수도사업소 민원 감소(전·후 사용자간 요금계산 관련 민원)

- 부수적인 효과로 '99 세입증대(238억원) 및 체납발생건수 감소기대

※364억(월수수익)×20/60×2회(짝, 홀수)×98%(징수율)=238억

VI. 細部 推進計劃

- 水道條例施行規則 改正

- 관련규정

-제27조 제3항(점검구역): 18개구역 → 16개 구역

-제32조 제2항(조항절차): 검침 익월13일 → 납기월16일

-제40조 제2항(일시급수조정): 검침 매월말 → 매월 10일

- 檢針 分區 調整

- 본 납기 단축계획 및 구조조정으로 검침원 정원감축(600명→551명)에 따른 검침일정, 검침지역 등을 조정

- 추진기간: '98.11.1~'99.2.15까지

- 檢針日 變更弘報

- 기간: '99.1월~'99.2월(2개월)

- 홍보방법

-반상회보 및 지역신문 게재

-사업소별 안내문 제작, 수용가에 배부